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11]
(제정) 2022.02.11 조례 제1792호 *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57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근거)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산모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

제5조(지원신청) 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예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인이 제4조의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바우처 금액 및 지원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바우처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2.2.11.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